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5956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595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5가합5665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D

변론 종결 2018. 5. 4.

판결 선고 2018. 8.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5가합5665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주위적으로 또는 제1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8/111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878/1116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37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10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37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480,587,582원 및 그 중 84,541,129원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708,071원에 대하여 2006. 10. 2.부터, 460,434원에 대하여 2006. 11. 14.부터, 1,998,865원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97,879,082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45,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의료법인 C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나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분리확정 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은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3면 16, 17행의 "그런데 위 L롯트(M) 토지, P롯트(Q) 토지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런데 당심 증인 AN(이 사건 토지 및 AC 롯트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AI의 아들이다)은 원고 측과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AV블록 토지에 관한 잔금 약 20억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배합의 제1항이 정한 채권·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L롯트(M) 토지, P롯트(Q)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배합의가 정한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5면 16, 17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원고 B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6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제16면 5 내지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11. 21. 4,000만 원, 2012. 1. 6. 6,000만 원, 2012. 1. 30. 2억 원, 2012. 5. 8. 5,000만 원, 2012. 7. 9. 2,000만 원, 2013. 9. 16. 1억 원, 2013. 10. 18. 1억 원, 2013. 10. 24. 1억 원, 합계 6억 7,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E과 함께 2010. 10. 15.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징구한 바 있는데, 위 이체금 6억 7,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징구하지 않았고 담보를 설정 받지도 않은 점, ② 원고 B은 동생 AW 작성의 진술서(갑 제29호증)를 제출하여 원고 측이 피고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피고와의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원고 B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이미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이 사건 분배합의를 체결하고 정산단계에 있던 시기로서 원고 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거액의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E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배합의 이후로도 피고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피고와 이성교제를 계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실제로는 E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체금 중에는 U롯트(V) 토지와 X롯트(Y) 토지의 매각차익에 대한 피고 몫이 포함되어 있는 점(다만 위 매각차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체금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기훈

판사권순남

판사차승환

별지